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보도자료

보도 시점 2026. 2. 23.(월) 12:00 배포 2026. 2. 23.(월) 10:00 (브리핑 10:30)

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

- 118만개 법인, 3월31일 까지 법인세 신고·납부-
- 수출기업 등 10만 개 법인에게 납기연장,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-

1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·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□ **2025년 12월 31일**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**3월 31일까지** 법인세를 신고 · 납부해야 하며,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,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,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**118만 개**로 전년에 비해 **3만 개 증가**하였습니다.

* 12월말법인 신고대상 수: (23년) 107만개, (24년) 110만개, (25년) 115만개, (26년) 118만개

□ **12월말 법인**의 경우 일반적으로 **3월 31일**이 신고 · 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**연결납세적용 법인**, **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**은 **4월 30일까지** 신고 ·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※ 참고1 : 연결납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

○ 또한, **외부감사 대상법인**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**3월 30일**까지 **신고기한 연장**을 신청하면 **4월 30일까지**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단,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(연 3.1%)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
□ 법인세 **납부세액**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**1천만원을 초과**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.

○ 납부할 세액이 **2천만원 이하**인 경우에는 **1천만원은 3월 31일**에,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(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) 납부하고

○ 납부할 세액이 **2천만원을 초과**하는 경우에는 **50%를 3월 31일**에,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(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)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2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.

□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**김해상공회의소**(1.21.), **포항철강산업단지**(1.22.), **여수석유화학단지**(1.28.), **대덕연구개발특구**(2.4.)를 방문하여 **현장간담회**를 통해 **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**하였습니다.

○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, 내수부진, 고금리/고환율 지속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서의 **자금조달 어려움**을 토로하면서 **세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요청**하였습니다.

□ 이에 국세청은 현장 간담회에서의 **애로사항**을 **반영**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**중소/중견기업**이 **일시적인 자금난**으로 **경영위기**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**적극행정의 일환**으로,

○ ❶매출이 감소한 **수출 중소·중견기업**, ❷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**석유화학/철강/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**, ❸**고용/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*** **중소·중견기업**에 대해 **법인세 납부기한**을 3월 31일에서 **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**하고, **환급세액**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(4월 30일) 보다 20일 앞당겨 **4월 10일까지**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* (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) 여수시, 포항시, 서산시, 광주 광산구, 울산 남구
(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) 여수시, 포항시, 서산시, 광양시

○ 이번 세정지원으로 **10만 개** 법인에게 약 **3조 원**의 **자금 유동성지원 효과**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| 세정지원 규모 |

구 분	법인 수	지원효과*
❶ 수출기업	1.3만개	1.3조원
❷ 석유화학/철강/건설업	6.5만개	1.4조원
❸ 고용/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	2.6만개	0.4조원
합계 (중복제거)	10.0만개	3.0조원

* 전년('25.3월)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(환급)한다는 가정하에 지원효과 추정

□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**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**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**분납세액**을 **7월 31일**(중소기업은 9월 1일)까지 납부하면 됩니다.

○ 다만,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**법인세 신고**는 **3월 31일까지** 하여야 하며,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**최대 6개월**(12월 31일까지) **납부기한 연장**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참고2 : 법인세 신고 관련 세정지원

3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.

□ 국세청은 **외부기관 수집자료**와 **빅데이터 분석자료**를 **신고도움자료로 제공**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.

○ 국고보조금 수령, 주택(토지)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**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**하고 생활용품 구입, 병원진료 등 **법인카드**를 **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**이 있는 금액을 안내하여 추후 세금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.

○ **공제감면 제도**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, 통합고용/투자세액공제,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**절세도움말**로 제공합니다.

※ 참고3 :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

□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손금(비용) 계산시 **전통시장**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**20% 범위내**에서 **추가로 손금산입** 할 수 있는데,

○ **올해부터는**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**전산시스템**을 **개선**하여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**신고도움자료**로 **제공**하여 **전통시장 활성화**를 **지원**하겠습니다.

※ 참고4 :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

□ 아울러, **법인자금의 사적사용**에 대한 **검증**을 **강화**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하여 **엄정하게 검증**할 예정이니

○ '**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**' 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**성실하게 신고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주요 개별분석 항목 |

- 법인이 보유(임차)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
-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
-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
-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

※ 참고5 :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

4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이번 신고에는 **부동산임대업**을 **주업**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**소규모법인**의 **세율이 인상**되어 과세표준 **2억원 이하** 구간에 **19%**의 세율을 적용(종전 9%)합니다.

○ 또한,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**상시근로자 명세서**를 제출하여야 하고, **창업중소기업감면**과 **통합고용세액공제**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하며,

○ **전통시장**에서 법인카드로 **기업업무추진비**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%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**20%**로 **상향**되었습니다.

※ 참고6 : 주요 세법개정 사항

□ 앞으로도 국세청은 **민생경제 회복**과 **기업활력 제고**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**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**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법인납세국 법인세과	책임자	과 장 신재봉 (044-204-3301)
		담당자	사무관 황진하 (044-204-331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	책임자	과 장 이용선 (044-204-2551)
		담당자	사무관 지승환 (044-204-2552)

참고 1 연결납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

□ **(연결납세제도) 모회사**와 **자회사***를 **하나**의 **과세단위**로 보아 **소득·결손을 통산**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직형태(사업부 또는 자회사)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(법인세법 §76의8)

* '24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지분 90%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

○ **(적용방법)** 모법인 관할 **지방국세청장의 승인**을 받아 **적용**하되 일정 사유*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5년간 재적용 제한

*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미적용,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등

○ **(신고납부) 모법인**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**4개월 이내** 법인세 **신고·납부**를 이행하고, **자법인**은 **연대납세의무**를 부담

□ **(성실신고확인제도)**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(법인세법 §60의2)

<적용대상 법인>

❶ 다음의 **소규모 법인** 요건에 **모두 해당**하는 **내국법인**
-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% 초과
-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·배당소득·부동산(권리)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
-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

❷ **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**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**법인 전환**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**내국법인**('18.2.13. 이후 법인 전환부터 적용)

❸ **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**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**인수**한 **다른 내국법인**(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)

○ **(신고기한)**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**4개월 이내**

○ **(세액공제)** **성실신고 확인비용**의 **60%**를 법인세에서 **공제**(150만원 한도)

○ **(가 산 세)**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**산출세액*의 5%**와 **수입금액의 0.02%** 중 **큰 금액**을 **가산세**로 부과

*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액 제외

참고 2 법인세 신고 관련 세정지원

□ **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**

❙세정지원 대상 법인❙

구 분	선 정 기 준	법인수 (지원효과)*
❶ 수출기업	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수출 중소/중견기업**으로서 '24년 대비 '25년 **매출이 감소**할 것 ① '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% 이상인 중소/중견기업 ② 무역협회 선정 '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'·'수출의탑 수상기업'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	1.3만개 (1.3조원)
❷ 석유화학/철강/건설	‣ **석유화학/철강/건설업**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/중견기업으로서 '24년 대비 '25년 **매출이 감소**한 법인	6.5만개 (1.4조원)
❸ 고용/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	‣ 여수 등 고용/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/중견기업	2.6만개 (0.4조원)
합계 (중복제거)		**10.0만개 (3.0조원)**

□ **세정지원 내용**

○ **(납부기한 직권연장) 납부 법인**은 **납부기한**을 **3개월**(3.31.→6.30.) **직권 연장**

- 납부기한 추가 연장(최대 '26.12.31.까지)*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,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

* 단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최대 2년('28.3.31.)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(국징령 §12②)

구 분	일반기업(중견기업 포함)	중소기업
분할납부 기한	'26년 4월 30일 → '26년 7월 31일	'26년 6월 1일 → '26년 9월 1일

○ **(환급세액 조기지급) 환급 법인**은 **10일 내**(4.10.까지) **환급금 신속 지급**

□ **세정지원 규모**(세정지원 대상 법인의 '25.3월 신고세액 기준)

세정지원대상 법인수	합 계	납부기한 연장	환급금 조기지급
10만개	3.0조	2.7조원	0.3조원

참고 3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

□ 신고도움서비스

○ **(개요)**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 제공

○ **(화면 구성)**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**6개 유형**으로 **분류**하고 탭(Tab) 형태로 구성

<화면 구성 및 제공 자료>



유 형	제공 자료
주 요 안 내	주요지표 분석, 신고시 유의사항·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
기 업 분 석 자 료	법인 기본사항, 연도별 신고상황, 공제·감면 현황,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
신 고 참 고 자 료	중간예납세액, 부가가치세·원천세 신고자료, 국고보조금 수취내역,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, 주주현황
신 고 시 유의사항	개별분석·공통분석 자료, 업종별·계정과목별 유의사항
절 세 도 움 말	법인별·업종별 절세도움말
세 법 도 우 미	주요 개정 세법, 참고할 세법 규정

□ 주요 개선사항

○ **(신고도움자료 확대·보완)**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**신고도움자료**(신고 시 유의사항, 절세도움말, 세법도우미)를 **확대 제공*** 하는 한편

* 신고도움자료 : ('25년) 430개 유형 → ('26년) 445개 유형(15개 증가)

- **주택 양도내역**(일자, 물건지) 등을 **구체적**으로 **기재**하고 **'25년** 중 **폐업한 법인**에게도 **신고도움자료**를 **제공**하여 안내 실효성을 높였음

○ **(연결납세 법인 개선) 신고편의 제고**를 위해 연결 납세 법인의 **수정신고**도 **홈택스**를 통해 **전자신고**할 수 있도록 **개선**

□ 신고도움자료 안내

○ **(모바일 안내)** 신고시 유의사항에 **개별분석자료**가 **제공**되는 **중소기업**의 **대표자**에게 모바일로 관련 사항을 **직접 제공**

참고 4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

□ 제도개요

○ 내국인이 2028.12.31. 이전에 법인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의 20%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

- ❶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할 것, ❷ 지출처가 모텔 및 여관업, 주점업, 사행시설 운영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등 경영사업자가 아닐 것

<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>

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= (1) + (2) + (3)

(1)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= ❶ + ❷ + ❸
- ❶ 기본한도 = 1,200만원(중소기업 3,600만원) × (사업연도월수÷12)
- ❷ 일반수입금액 한도 = 일반수입금액 × 적용률(0.3/0.2/0.03%)
- ❸ 특정수입금액 한도 = 특정수입금액 × 적용률(0.3/0.2/0.03%) × 10%

(2) 문화비지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: min(❶, ❷)
- ❶ 문화접대비 지출액
- ❷ 위 (1) 일반접대비 한도액 × 20%

(3)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: min(❶, ❷)
- ❶ 전통시장 지출액
- ❷ 위 (1) 일반접대비 한도액 × 20%

□ 세법개정

○ '24.1.1. 이후 신고분부터 최초 도입(손금산입 한도액 10% 범위 내), '26.1.1. 신고분부터 손금산입 한도액 20%로 상향

참고 5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

1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

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·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에 산입

□ 사전 신고안내

○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

□ 신고내용

○ 영상컨텐츠개발업을 영위하는 ㈜□□의 대표이사 △△△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, 골프장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

□ 검증결과

○ ㈜□□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과소 혐의에 대해 계정별원장, 지출증빙 등 해명자료를 검토한 바 업무무관 비용 계상을 확인

→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



✓ 업무무관 법인카드 사용금액 및 지출증빙 없는 경비 손금불산입 소득처분

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부당공제

고가의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

□ 사전 신고안내

○ 법인이 보유한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됨을 사전 안내

□ 신고내용

○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□□는 고가의 수입차와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으며,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

□ 검증결과

○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*을 검토한바,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

* 신용카드 사용 지역, 주유 내역,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참조

→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추징



✓ 특수관계인의 사적비용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

3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

직원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

□ 사전 신고안내

○ 법인이 소유·임차한 주택 중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,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사전 안내

□ 신고내용

○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㈜□□이 임차한 주택을 대주주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

□ 검증결과

○ 최대주주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

→ 이자비용·주택 유지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하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최대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



✓ 주택 유지비용 및 임대료 시가 상당액 손금불산입 최대주주 배당 소득처분

4 비상주 공유오피스 이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

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후 사업자등록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

□ 사전 신고안내

○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50%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

□ 신고내용

○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실제 업무는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수행하면서, 주소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에 두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

□ 검증결과

○ 택배 발송내역, 대표자 및 직원의 거주지 등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공유오피스는 인적·물적 시설없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을 확인

→ 부당하게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인하여 법인세 추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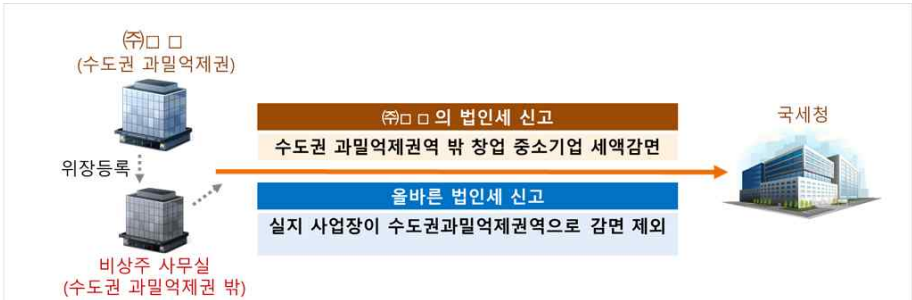

✓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 소재 비상주 공유오피스 위장등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인

5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적용

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고용증대세액 공제 적용시 지점(수도권 소재)사업자의 세액공제액을 과다 신고

□ 사전 신고안내

○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시 근로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함을 안내

□ 신고내용

○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㈜□□ 는 본점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등록하고 수도권내 다수의 지점을 영위하며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수도권 밖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

□ 검증결과

○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달리하는 경우, 공제액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*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

*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공제액 : (수도권) 1,100만원 / (수도권 밖) 1,200만원

→ 1인당 공제액 차이만큼의 과다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부인



✓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과다 적용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부인

참고 6 주요 세법개정 사항

□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의 세율인상

종 전	개 정
○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	○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

과세표준	세율
2억원 이하	9%
2억원~200억원	19%
200억원~3,000억원	21%
3,000억원 초과	24%

과세표준	세율
200억원 이하	19%
200억원~3,000억원	21%
3,000억원 초과	24%

* **(소규모법인 요건)** [①지배주주등 지분율 50% 초과] & [②부동산임대업이 주업 or 이자·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% 이상] & [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]

□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

종 전	개 정
○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중복배제	○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

□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(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)

종 전	개 정
○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서류 - 세액공제신청서, 공제세액계산서 - (추가)	○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서류 - 좌동 - 상시근로자 명세서

□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

종 전	개 정
○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- 추가 손금산입 한도 ❶ 문화비 지출분 :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% ❷ 전통시장 지출분 :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%	○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- 추가 손금산입 한도 ❶ (좌동) ❷ 전통시장 지출분: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%

참고 7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

□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

○ 법인 기본정보 → 표준재무상태표 → 표준손익계산서 →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 계산서 →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

▪ 홈택스 접속 → 세금신고 → 법인세 신고 → 정기신고 → '간편신고(정기신고)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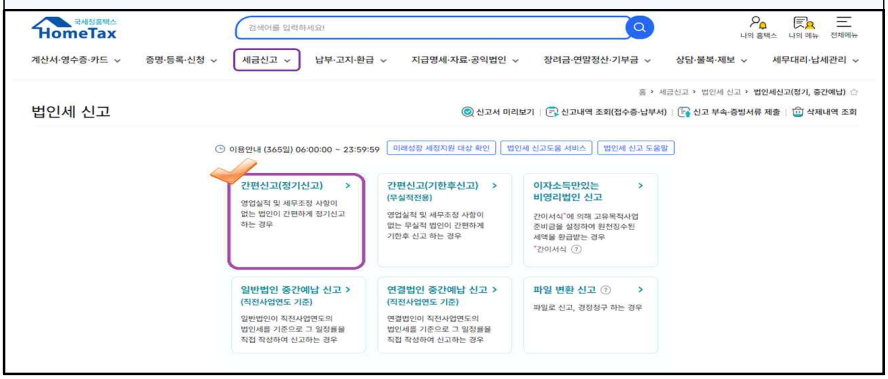

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

○ 법인 기본정보 →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→ 원천납부세액 →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→ 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

▪ 홈택스 접속 → 세금신고 → 법인세 신고 → 정기신고 → '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'

